

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지침

제정 2009. 06. 13

개정 2010. 04. 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감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4.17.>

③ 위원장은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심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2인 이내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원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정
2. 감사인 선정·평가기준, 방법의 제정 및 감사인의 변경
3. 기타 감사인 선정에 있어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 및 운영은 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계획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감사인 선정 절차)** ① 위원회는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사를 모집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감사인을 선정한다.
-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의결사항
4. 기타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9.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